규제 · 제도 · 정책 개선 건의 사례와 시사점

2026.8월

본 보고서는 학술적 연구 및 공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상업적 용도로의 활용은 제한됩니다.

본 보고서의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특정 기업 활동, 금융 투자 또는 법률적 판단의 근거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규제 · 제도 · 정책 개선 건의 사례와 시사점

('26.8월, 글로벌금융중심지팀, 주채희 매니저)

1 서론

□ 조사 목적 및 범위

○ 조사 목적

- 금융위원회의 제7차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2026~2028) 내 중점 전략 중 하나로 디지털 전환, 규제혁신 등 금융경쟁력 강화가 제시되는 등 금융중심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규제·제도·정책 개선이 필요한 상황

- 이에 따라 경제 분야 협회·단체에서 발표한 규제·제도·정책 개선 건의 사례들을 검토하여 부산 금융중심지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조사 범위

- 암참 특별보고서 한국 금융 허브 추진 전략 은행 및 증권부문 편(주한미국상공회의소), 생산적 금융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과제(한국경제인협회), 중소기업 정책 건의백서 분야별, 지역별(중소기업중앙회)을 중심으로 금융중심지 육성과 관련하여 살펴볼 만한 규제·제도·정책 개선 건의 사례들을 검토

2 암참* 특별보고서 한국 금융허브 추진전략 은행 및 증권부문편 검토

* The American Chamber of Commerce in Korea(AMCHAM Korea)

□ 주요 내용[1)]

○ 주한미국상공회의소는 '26.3월 암참 특별보고서 한국 금융허브 추진전략 은행 및 증권부문 편을 발간

- 한국에서 영업하는 미국계 은행·증권사 의견을 바탕으로 39개의 현안(은행업·증권업 공통 15개, 은행업 13개, 증권업 11개)을 도출하였고 그 중 10개를 우선순위 항목으로 설정

1)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암참 특별보고서 한국 금융허브 추진전략 은행 및 증권부문 편, 2026.

<표 1 : 10개 우선순위 항목(주한미국상공회의소)>

분야	현안 및 내용	건의사항
공통	**① IT 인프라 - IT 망분리** - 망분리 규제를 준수하기 위해 본사와 다른 정책을 적용해야 해서 비용이 발생하고, 신기술 적용에 제약	**o 망분리 의무 적용 완화** - 전용회선 등 안전성이 확보된 통신망에 기반한 연결 등은 망분리의무 완화 필요 **o 망분리 예외 사유 인정** - 전산시스템 운영관리를 해외 계열사에 위탁시 안전성이 확보된 통신망을 통해 연결이 이루어지는 경우 등에 업무상 불가피성을 인정해 예외 적용 필요
	② 실명확인 제도 개선 - 실명확인 절차가 외국 법인에게 부담 (공증 제도 없는 나라 고객에 공증 요구 등) * 최근 외국인투자자의 대리인이 소속된 금융회사=실명·고객확인을 수행하는 당사자인 경우 위임장 공증을 완화하는 등의 절차 완화가 추진됨	**o 실명확인 요건 완화** - 외국 법인 고객에 대한 실명확인 방법 완화 등
은행업	**③ 본점 자본금 인정 기준 마련** - 현 은행법은 본점 자본금을 인정하지 않고 외은지점 영업기금을 외은지점 자본금으로 의제해 사업 확장에 제약	**o 외은지점 본점 자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금으로 인정하여 주기를 요청**
	④ 외환건전성 부담금 - 외국인의 국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본점·해외 계열사로부터 단기 차입이 필요한데, 이는 외환건전성 부담금의 증가로 이어짐	**o 본점·해외 계열사로부터의 단기차입금을 비예금성외화부채 등(외환건전성 부담금 산정 기준)에서 제외해주시기를 요청**
	⑤ 외환포지션 한도 관련 규제 완화 - 외은지점 외환포지션 한도 계산 기준인 자기자본이 갑기금·을기금·적립금 및 이월이익잉여금의 합계로 국한돼 낮은 한도가 적용되어 거래가 어려움	**o 외환포지션 한도 산정시 자기자본 계산 방식을 개선하거나 외은지점을 외환포지션 한도 산정의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고려해 주시기를 요청**
	⑥ 자금통합관리* 한도 상향 * 국내기업·외국인투자기업이 현지법인·외국본사와 수시 대출·차입등이 가능한 자금공유계약을 맺고 국내외 금융기관과 외화예금, 외화차입, 담보제공 거래를 하거나 현지법인·외국본사와 외화대차거래를 해서 참여기업간 잉여·부족자금 통합관리 - 외국환거래규정 자금통합관리제도가 미화 5천만불 이내에서만 허용되어 자금통합관리를 통한 효율적 자금관리가 원활하지 못한 문제	**o 자금통합관리 한도를 미화 1억불로 상향하는 방안을 고려해 주시기를 요청**

	⑦ 통화안정증권에 대한 투자매매업 인가 - 외은지점은 통화안정증권에 대한 투자매매업 인가가 없어 해외투자자의 수요에 대한 대응이 어려움	**o 외은지점 포함 국내은행에 통화안정증권 투자매매업 인가 허용을 고려해주실 것** - 국내 증권사 업무 영역 침해 우려는 해외투자자와 거래에 한정한 인가를 통해 해소 가능
증권업	**⑧ 적용 요건의 일관성** - 조직형태변경에 따른 인가에 특례*가 적용되나, 이후 인가 유지요건에는 특례가 규정되어 있지 않음 * 자본시장법 시행령 19조의4(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조직형태 변경에 따른 인가에 관한 특례) 등	**o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특례에 따라 조직형태를 변경한 직후 유지요건을 위반하게 되는 모순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권해석 또는 법규 개정을 요청**
	⑨ IPO 주관사의 주식 보유 의무	**o 예외 적용 요청**
	- 청약 미달로 상장공모주식을 인수한 주관사에도 30일의 처분금지기간이 적용되어 부담	- 청약 미달로 외국계 주관사가 인수한 주식을 처분금지기간에도 해외 계열사에 매각할 수 있도록 유권해석 수정을 요청
	- 일반 기관투자자 잠재 배정 물량의 4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 기관투자자에게 선배정해야하고 의무보유 확약 물량 배정 미달시 주관사가 공모주식 1% 또는 30억원을 6개월 이상 의무보유해야 하는 규정	- 해외기관투자자들은 자발적 보호예수를 확약하는 경우가 적기 때문에 IPO 해외주관사에게는 의무보유 확약 물량 배정 미달시 주관사가 공모주식 일부를 의무보유해야하는 규정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도록 요청
	⑩ 공매도 규제 위반 관련 조사 및 제재 - 착오나 실수에 의한 공매도 규제 위반과 고의적인 위법 무차입 공매도의 구별이 필요	**o 착오·실수로 발생한 공매도 규정 위반은 고의적 위반과의 형평성을 감안해 적절한 수준의 제재가 부과될 수 있도록 규제 개정을 요청** - 제도 개선 과정에 업계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협의 창구 마련 필요

자료 : 암참 특별보고서 한국 금융허브 추진전략 은행 및 증권부문 편(주한미국상공회의소)

□ 암참 특별보고서 검토를 통한 시사점 도출

o 글로벌 스탠더드와의 정합성이 필요

- 암참은 IPO 주관사의 주식 보유 의무 등을 글로벌 스탠더드와 부합하지 않는 제도 항목의 현안으로 제시했고 IT 인프라-IT 망분리 현안에서는 망분리 규제로 인해서 본사와 다른 정책을 적용해야 하는 어려움을 제기

- 외국계 금융기관은 여러 국가에 걸쳐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 국내 제도와 글로벌 스탠더드 간 정합성을 높이는 것이 글로벌 금융회사의 국내 진입 및 사업 운영 부담을 완화하고 금융중심지 경쟁력을 제고하는 요소가 될 수 있음

○ 규제의 일관성과 투명성

- 암참이 적용 요건의 일관성과 규제 투명성 및 제재 절차를 현안으로 제시하는 등 규제의 일관성과 투명성을 중시하는 점을 감안할 때 외국계 금융기관 유치를 위해서는 규제 요건·절차를 명확히 제시해 예측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 업계와의 협의 및 환류의 중요성

- 암참은 공매도 규제 위반 관련 조사 및 제재 현안에서 업계와의 의견 협의 창구 마련을 요청하는 등 제도 개선 과정에서 시장 참여자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협의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보임
  * '26.1월 관계기관 합동으로 발표된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한 외환·자본시장 종합 로드맵의 개선 방안 중 하나로 공매도 규제 합리화가 제시되었음

- 원화 국제화 로드맵에 외국환거래법령 사전신고 규제 완화 방안(자금통합관리 등) 마련과 외국계금융기관이 본사등으로부터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게 차입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 마련 등이 포함[2]돼 암참 특별보고서 건의사항 일부가 정부 제도 개선 계획에 반영되었음을 알 수 있고 향후 규정 개정까지 이어질지 모니터링 필요
  * 암참 특별보고서는 지점의 자금 조달제약 개선(본지점 차입한도 폐지) 현안에서 외은지점에 대한 외환거래규정상 외화차입한도 제한의 폐지 또는 완화를 요청하였음

- 부산 금융중심지 역시 외국계 금융회사와의 상시 협의 체계를 통해 제도 개선 수요를 지속 발굴해 관계기관에 건의하고 처리 결과를 시장 참여자에게 환류할 수 있도록 협력 체계를 고도화할 필요성이 있음

○ 글로벌 규제 개선 흐름을 고려할 필요성

- 영국 금융 종합 개혁안인 리즈개혁에 고위관리자 및 인증 제도* 개선이 제시됨[3]
  * SM&CR(Senior Managers and Certification Regime) : 금융사 고위임직원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도입

- 우리나라 책무구조도도 영국 SM&CR의 영향을 받아 도입되었고[4] 암참에서 책무구조도를 현안으로 제시한 만큼 해외 제도 개선 사례를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그 외의 규제에 대해서도 글로벌 흐름을 참고할 필요성이 있음

---

2) 관계기관 합동, 원화국제화로드맵, 2026.
3) 황원정·이상원, 영국의 금융 종합 개혁안 "리즈 개혁" 내용 및 평가, 국제금융센터, 2025.
4) 양승현, 영국 SM&CR 제도에 관한 소고: 금융회사 내부통제 제도개선 방안 관련, 보험연구원, KiRi 보험법 리뷰 (2023-10), 2023.

3 생산적 금융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과제(한국경제인협회) 검토

□ 주요 내용[5)]

○ 한국경제인협회는 '25.11월 생산적 금융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과제를 건의

- 기업집단·지주회사 규제 합리화, 정책금융 및 기업대출 시스템 개선, 자본시장 및 해외진출 활성화, 여신전문금융회사(캐피탈 등) 기능 강화, 보험사 자산운용(ALM) 및 건전성 규제 개선 분야에서 20개의 과제를 제시

<표 2 : 제도 개선 과제(한국경제인협회)>

분야	기업집단·지주회사 규제 합리화
과제	ㅇ 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 보유 관련 행위 제한 규제 완화 * 공정거래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서 지주회사는 자회사 주식을 50% 이상(자회사가 상장법인인 경우 등은 30%, 벤처지주회사 자회사인 경우 20%) 보유해야 하므로 지주회사의 자금 부담 증가 ㅇ 지주회사 금융회사 보유 규제 완화 - 단기적으로는 지주회사가 여신금융사를 보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장기적으로는 지주회사의 금융회사 보유 금지 규정을 폐지할 것을 개선 방안으로 제시 ㅇ 지주회사 벤처투자 규제 완화 - 지주회사의 CVC(Corporate Venture Capital) 보유 관련 규제*를 완화할 필요성이 있음 * 소유 지분(지주회사는 CVC 지분 100%를 소유해야 함), 부채비율(지주회사 CVC는 자본총액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 보유를 제한), 투자 대상(해외 기업 투자는 총자산의 20%까지만 가능) 등에 대한 규제가 존재 ㅇ 기업집단에 부동산투자회사 편입 제외 : 계열회사 편입 제외 대상에 추가 ㅇ 가상자산거래업 기업집단 자산총액 산정기준 합리화 *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통령령에 따른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대통령령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하는데 금융업·보험업 영위 회사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대차대조표 자본총액(자산총액-부채액)과 자본금 중 큰 금액을 기준으로 함 - 가상자산거래업도 자본총액과 자본금 중 큰 금액을 기준으로 자산총액을 산정하여 고객예치금을 자산총액에서 제외할 수 있게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을 요청 ㅇ 지배구조 개편 관련 조세 규정 정비 - 지주회사 전환에 있어 분할 전 존속회사가 자기주식을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이연이 가능하도록 개선 필요
분야	정책금융 및 기업대출 시스템 개선
과제	ㅇ 정책금융 정보 통합 안내체계 구축 ㅇ 신용평가·담보요건 완화 ㅇ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장기 저리대출 상품 활성화

5) 한국경제인협회, 생산적 금융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과제, 2025.

분야	자본시장 및 해외진출 활성화
과제	o 금융복합기업집단법 내 불필요한 해외법인 규제 제외 - 금융복합기업집단법은 기업집단 소속 해외금융회사까지 감독 대상에 포함하고 있어 해외법인 관련 적용 제외 규정 신설을 개선방안으로 제시 o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 증권사 참여 허용 * 벤처·혁신기업 등에 주로 투자하는 공모펀드 o 해외 금융회사 합병을 통한 해외 진출 시 자본규제 완화 - 국내 증권사가 해외 금융회사를 인수하는 경우 연결대상 자산 전체가 아니라 출자금액에 한정하여 NCR* 위험액을 산정할 수 있도록 개선 * 영업용순자본비율(Net Operating Capital Ratio) : 영업용순자본을 총위험액으로 나눈 것
분야	여신전문금융회사(캐피탈 등) 기능 강화
과제	o 할부금융사 대상 불필요한 자동차금융 DSR* 규제 제외 *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ebt Service Ratio) : 소득 대비 대출 원리금 상환액 o 커머셜*을 소상공인 정책자금 집행기관으로 인정하는 방안 검토 * 상용차·건설기계 등을 대상으로 할부·리스 금융 제공 o 캐피탈사의 신용보증기금 보증상품 취급 허용 o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차입제한 완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7조 제1항] 여신전문금융회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방법으로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되거나, 금융위원회의 인가 또는 허가를 받거나,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 2. 사채(社債)나 어음의 발행, 3.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의 매출, 4. 보유하고 있는 대출채권(貸出債權)의 양도,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분야	보험사 자산운용(ALM) 및 건전성 규제 개선
과제	o 파생상품 활용 ALM* 관련 규제 완화 * Asset Liability Management : 자산과 부채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기법 - 이자율스왑의 회계 불일치*를 해소할 수 있게 보험부채 중 금리위험이 있는 계약을 헷지회계** 대상으로 지정해 보험사의 모험자본 투자 여력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 * 이자율스왑의 평가손익은 시가로 즉시 인식되나, 헷지 대상 부채는 시가 평가가 달리 적용되어 회계상 손익이 불일치하는 문제 ** 헷지 대상과 헷지 수단의 평가손익 인식이 일관되도록 허용하는 회계 처리 방식 o 인프라 대출의 ALM 활용을 위한 장치 강화 - 인프라 대출의 현금흐름 안정성을 강화할 수 있는 장치(ex. 조기 상환 보호 조항, 최소 수익률 보증)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o 보험사 해외채권 대여 활성화 - 해외 예탁기관을 통한 대여중개서비스에 대해 신용공여 예외 조항을 적용해 활성화 o 선제적 ALM 관리를 통한 건전성 강화[RP(RePurchase Agreement) 매도 허용 확대] - 현행 규정상 변액보증위험 헷지 목적 파생상품의 일일정산을 위한 RP 매도가 적정 유동성 유지를 위한 목적으로 인정되는데, 보험부채 헷지를 위한 파생상품거래에 대해서 운용자금 정산시 RP 매도를 인정하는 것으로 확대하는 방안 등을 제시

자료 : 생산적 금융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과제(한국경제인협회)

□ 생산적금융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과제 검토를 통한 시사점 도출

○ 한국경제인협회는 일부 과제의 개선 방안으로 공정거래법 개정을 제시

- 생산적 금융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과제 중 지주회사 자회사 행위 제한 규제 완화, 지주회사 금융회사 보유 규제 완화, 기업집단에 부동산투자회사 편입 제외 등의 과제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을 개선 방안으로 제시

- 또한 한국경제인협회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공정거래분야 제도 개선 과제 24건을 제출[6]하는 등 공정거래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중

- 금융중심지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금융투자 제약 요인 개선을 위해서는 금융 관련 규제뿐만 아니라 공정거래 관련 규제에 대한 검토도 병행할 필요가 있음

○ 정책금융기관 간 협력 강화

- 한국경제인협회는 정책금융 정보 통합 안내체계 구축 등 정책금융 시스템 개선 과제를 제시

- 정책금융 정보 통합 안내체계 구축 등을 위해서는 정책금융기관 간 협업이 필요하고 정책금융기관이 집적된 부산 금융중심지는 기관 간 협업 모델 구축을 위한 기반을 보유하였다는 강점을 활용할 수 있음

○ 모험자본 공급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 한국경제인협회가 제기한 개선 과제들 중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파생상품 활용 ALM 관련 규제 완화는 모험자본 공급 확대로 이어질 수 있는 제안임

- 부산시는 지역 벤처생태계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벤처펀드 조성을 통하여 지역 유망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을 강화할 계획과 민관협력 벤처모펀드 조성을 추진할 계획 등을 제시[7]

- 펀드 조성과 함께 모험자본 공급 확대에 기여할 수 있는 각종 제도 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검토한다면 금융중심지와 지역 벤처생태계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6) 한국경제인협회, 「공정거래분야 제도 개선 과제」 건의, 2025.11.18.
7) 부산광역시, 부산시, 지역 벤처생태계 활성화 위한 협력 본격화, 2026.7.3.

4 중소기업 정책건의백서(중소기업중앙회) 검토

□ 주요 내용[8)]

○ 중소기업중앙회는 '25.12월에 중소기업 정책건의백서(분야별, 2025년 기준)와 중소기업 정책건의백서(지역별, 2025년 기준)를 발간

- 중소기업 정책건의백서(분야별, 2025년 기준)의 금융·세제 부문에서 금융중심지 육성 측면에서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는 과제들을 하단의 표로 정리하였음

<표 3 : 중소기업 정책건의백서 과제(금융)>

과제	건의사항
○ 67개 법정기금의 벤처·스타트업 투자 의무화	- 벤처·스타트업에 대해 67개 법정기금의 일정비율 투자를 의무화하는 제도 신설
○ 고객기반 금융 AI 서비스 개발을 위한 제도 개선	- 공동 테스트망을 통해 공용GPU·클라우드·보안환경 등 제공 요청 - AI 샌드박스 신설
○ 코스닥 활성화 펀드 - 코스닥 활성화 펀드 도입	- 정부 재정과 민간자금을 매칭해 펀드 재원을 조성하고, 정책자금의 우선손실 충당 등 민간 참여자 인센티브 제공
- 국민성장펀드와 코스닥 활성화 펀드의 연계	- 국민성장펀드가 민간자금의 마중물 역할
○ 기업가치담보권* 제도 도입 * 일본은 무형자산과 장래 현금흐름까지 포함하는 총 재산을 담보로 인정하는 기업가치담보권 제도를 도입	
○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 * 벤처·혁신기업 등에 주로 투자하는 공모펀드	
○ 매출채권 팩토링 확대	- 매출채권 팩토링 예산 확대
○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확대	-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적용을 내국법인으로 확대 -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출자에 대한 법인세 공제율 상향
○ 벤처투자조합 비거주자 증빙서류 사후 제출 허용 * 현재 벤처투자조합의 비거주자 조합원(외국인 개인)이 주식 매각시 양도소득세 면제 신청이 별도로 필요하며 거주자 증명서 등의 발급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문제가 있음	
○ 액셀러레이터 개인투자조합의 법인 출자한도 상향	- 법인 출자 한도 상향 또는 조합원 동의에 따라 자율 산정

8)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 정책건의백서(분야별, 2025년 기준), 2025. &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 정책건의백서(지역별, 2025년 기준), 2025.

o **액셀러레이터* 투자대상 기준 완화** * 초기창업기업에 대한 전문보육 및 투자가 주된 업무 ** 초기창업기업 :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	- 외부 투자유치 이력이 없는 기업은 5년/7년 미만 기업도 의무비율 투자 대상으로 인정되도록 완화 - 기투자기업 대상 3년 내 후속 투자시 의무 비율 투자로 인정
o **일반지주회사 CVC의 외부출자·해외투자 제한 완화** * 일반지주회사 CVC(Corporate Venture Capital)에 대해 외부출자 규모(투자조합 출자금 총액의 40% 이내), 해외 기업 투자 한도(총자산의 20%까지) 등 규제가 존재	- 개별 펀드가 아닌 CVC 총자산을 기준으로 외부출자 한도 설정 - 해외투자 비중 제한 완화
o **중소기업 자금조달 확대를 위한 동산담보대출 활성화 방안**	- 동산담보대출 실적을 KPI에 반영, 중소기업 대상 홍보·상담, IOT 활용 담보물 모니터링 시스템 인정을 유도, 동산담보대출 전용 정책보증 신설·확대
o **퇴직연금의 벤처펀드 출자 허용**	

자료 : 중소기업 정책건의백서(분야별, 2025년 기준)[중소기업중앙회]

- 금융·세제 부문에서는 이외에도 가업승계제도와 관련하여 업종 변경 제한 요건 폐지, 복수 최대주주의 가업승계 지원세제 활용 허용 등의 과제가 제기되었음

- 중소기업 정책건의백서(지역별, 2025년 기준) 부산울산지역본부 부문에서는 부산 조선해양기자재 산업 경쟁력 강화, HMM 및 해양 관련 기관 부산 이전을 통한 지역균형발전 견인을 포함한 52개의 과제가 제기됨

□ 중소기업 정책건의백서 검토를 통한 시사점 도출

o 정책과제 발굴 성과 관리

- 중소기업중앙회는 연도별 중소기업 정책과제 추이와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추진 경과 및 성과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정책과제 건의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과제 발굴 이후에도 추진 경과에 대한 지속적 관리가 필요함을 시사

- (참고) 백서에 수록된 정책과제 중 BDC 도입*, 벤처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일부)**, 액셀러레이터 투자대상 기준 완화(일부)*** 등은 백서 발간 전후 법령 개정·제도 개선이 이루어짐

* BDC 도입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25.8월 국회 통과 후 '26.3월 제도 시행

**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을 통한 간접출자시 주식 등 취득가액이 직전 3년 평균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의 3%를 법인세에서 공제했으나, 5% 공제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 벤처투자법 제13조(개인투자조합의 투자의무) 제2항 개정으로 의무비율 투자 대상에 국내외 투자 유치 이력이 없는 사업 개시 5년 이내 창업기업이 추가됨

○ 벤처투자 기반 확대 필요성

- 정부는 '25.12월 벤처 4대 강국 도약 종합 대책을 발표해 법정기금·퇴직연금의 벤처투자 참여 허용·확대, 대·중견기업의 전략적 투자 유도* 등의 세부추진과제를 제시했고[9] 중소기업 정책건의백서도 벤처투자 관련 다양한 정책 과제를 제기

  * 운용자율성 확대로 대기업 신규 CVC 설립 유인 제고 및 기존 CVC 활성화하는 방안 포함

- 이는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서 다양한 민간·기관투자자의 참여 기반을 확대할 필요성에 대한 정책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음을 시사하며, 금융중심지 육성에 있어서도 다양한 민간·기관투자자의 벤처 투자 시장 유입을 촉진할 필요가 있음

○ 가업상속공제에 대한 관심

- 중소기업 정책건의백서(분야별, 2025년 기준) 및 중소기업 정책건의백서(지역별, 2025년 기준)에서는 공통적으로 가업승계 관련 다수의 과제가 제기되고 있어서 가업승계가 중소기업계의 주요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기회발전특구 가업상속공제 특례 검토시에도 고령화·중소기업 경영자 세대교체 본격화에 따른 가업상속 수요 증가 가능성과 중소기업계가 제기하고 있는 제도상의 미비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부산시 기회발전특구 지정 현황 : 문현-북항지구(문현금융단지 3단계, 북항재개발지역 2단계), 기장 지구(동남권방사선의과학산단, 동부산 E-Park 및 E-Park 2단계), 강서지구(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미음지구, 에코델타시티 1단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㉕ 가업상속받은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제3항제2호라목* 및 제11항제1호**를 적용하지 않으며, 제1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구분에 관계 없이 별표에 따른 업종으로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둘 이상의 독립된 기업을 가업상속받은 경우에는 개별 기업별로 적용 여부를 판단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하 이 항에서 "본사"라 한다)를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제1항제1호가목1)부터 5)까지 외의 부분에 따른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한 경우

나. 본사가 기회발전특구에 소재하는 경우

2. 기회발전특구에 소재하는 본사 및 그 밖의 사업장에서 해당 기업의 업무에 종사하는 상시 근무인원의 연평균 인원이 해당 기업의 업무에 종사하는 전체 상시 근무인원의 연평균 인원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등으로 취임할 것

** 상속인(제3항제2호 후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의 배우자)이 대표이사등으로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9) 관계부처 합동, 벤처 4대 강국 도약 종합 대책, 2025.

5 그 외 개선 건의 사례 검토

□ 주한유럽상공회의소 백서 2025 검토

○ 주요 내용[10)]

-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 European Chamber of Commerce in Korea)는 '25년 회원사들이 제기한 70개의 이슈에 대해 건의사항 제시

- 자동차, 주류, 화학, 에너지 및 환경 등 17개 분야 위원회·포럼을 통해 의견을 취합하였고 보험위원회에서는 3가지 안건이 제기됨

  * (참고)해양산업위원회에서는 국적 취득 조건부 나용선 요건 완화·안전인증기관 제한 해소·국가재정 지원제도의 공정 경쟁 촉진을 비롯한 4가지 이슈를 제기

  ** 국적 취득 조건부 나용선(BBCHP, Bare Boat Charter Hire Purchase) : 용선 계약 기간 동안 용선료를 모두 내면 계약 기간 종료 후 용선자가 선박 소유권을 취득

<표 4 : ECCK 보험위원회 주요 이슈>

보험위원회 주요 이슈
자동차보험 피해자 본인인증(QR) 법제화 건의
망분리 환경에서 해외 보안 솔루션 도입 제한 완화
규제 당국의 대체보험 가이던스 제공이 필요 * ART(Alternativ Risk Transfer, 대체위험전가) : 전통 보험시장이 아닌 대체시장으로 리스크를 전가(ex. 캡티브 보험, 보험위험의 증권화 등)

자료 : 주한유럽상공회의소 백서 2025(ECCK)

○ 주한유럽상공회의소 백서 검토를 통한 시사점 도출

- ECCK가 각 분야 위원회·포럼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전년도 건의 사항 관련 정부 부처의 회신 및 ECCK의 후속 조치 계획을 백서에 수록하는 등 체계적인 의견 수렴 및 환류 구조를 운영하고 있는 점을 벤치마킹할 필요성이 있음

- ECCK 제기 이슈 중 망분리 환경에서 해외 보안 솔루션 도입 제한 완화와 관련하여 '26.4월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 개정으로 이용자의 고유식별정보·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지 않는 클라우드 기반 응용소프트웨어에 대한 망분리 예외가 적용되는 등 글로벌 협업 여건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이루어졌음

- 이러한 제도 개선에 더하여 외국계 금융기관의 글로벌 협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규제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관리할 필요성이 있음

10) 주한유럽상공회의소, 주한유럽상공회의소 백서 2025, 2025.

□ 2026 규제개선 종합과제 건의서(한국경제인협회) 검토

○ 주요 내용[11)]

- '26.5월 한국경제인협회는 회원사 의견 수렴을 통하여 2026 규제개선 종합과제를 국무조정실에 건의[12)]

- 2026 규제개선 종합과제는 총 100건으로, 이 중 금융위원회 관련 건은 9건임

<표 5 : 규제개선 종합과제(금융)>

과제
자동차 소비 시장 변화에 발맞춘 금융 제도 현실화 : 할부·리스사의 리스·렌트 비중규제 폐지 또는 완화
보험대리점 등록 가능 여신전문금융회사 확대 : 자동차 금융사의 보험모집 허용
간편 비밀번호 변경 시 과도한 멀티인증 요구 개선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권면 최고한도 상향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교통결제 기능 활성화
보험업권 경품금지 규제 폐지
보험회사 수직계열 자회사 관련 이중규제 해소 : 개별법에 따라 소관 부처의 별도 관리감독을 받고, 기업 경영효율화를 위한 수직계열 형태인 모자회사는 공정거래법상 내부거래 금지 규제를 받지 않도록 개선
가업승계 목적 신탁주식 의결권 제한 개선
금융정보 조회 요청 업무 프로세스 개선 : 협회·신용정보원 등을 통한 필터링 절차 마련

자료 : 2026 규제개선 종합과제(한국경제인협회)

○ 2026 규제개선 종합과제 검토를 통한 시사점 도출

- 2026 규제개선 종합과제에 선불전자지급수단 관련 과제들이 포함된 점을 감안할 때 산업계의 디지털 금융 관련 규제 개선 요청을 모니터링해 부산 디지털금융 활성화 정책과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실증사업 발굴에 참고할 필요가 있음

- 2026 규제개선 종합과제에 자동차 소비 시장 변화에 발맞춘 금융 제도 현실화,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권면 최고한도 상향 등 시장·환경 변화에 대응한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부산 금융중심지 역시 시장·환경 변화에 따른 제도 수요를 선제적으로 파악해 정책에 신속히 반영할 필요가 있음

11) 한국경제인협회, 2026 규제개선 종합과제 건의서, 2026.
12) 한국경제인협회, 2026 규제개선 과제 종합건의, 2026.5.6.

6 시사점

□ 개별 자료의 부산·금융중심지에 대한 시사점 요약

○ 암참 특별보고서 한국 금융허브 추진전략 은행 및 증권부문편 검토로 도출한 시사점

- 외국 금융기관 유치를 위해 국내 금융규제와 글로벌 스탠더드 간 정합성 제고를 검토할 필요가 있고 글로벌 규제 개혁 흐름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이 필요

- 금융중심지에 외국계 금융회사와 상시 협의 체계를 구축하여 규제 개선 수요를 발굴해 관계기관에 건의하고 그 결과를 시장 참여자에게 환류하는 협력 체계를 고도화할 필요성이 있음

○ 생산적금융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과제 검토로 도출한 시사점

- 금융중심지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금융 관련 법령 뿐 아니라 공정거래법 관련 제약 요인까지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모험자본 공급 확대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 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할 필요성이 있음

○ 중소기업 정책건의백서 검토로 도출한 시사점

-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민간·기관투자자의 시장 참여 기반 확대 검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금융중심지 육성 정책에서도 벤처투자 유입을 촉진할 필요가 있음

- 기회발전특구에 적용되는 가업상속공제 특례 검토시에 고령화에 따른 가업상속 수요 증가 가능성과 중소기업계가 제기하고 있는 제도상의 미비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주한유럽상공회의소 백서 검토로 도출한 시사점

- ECCK의 체계적인 의견수렴·환류 체계를 벤치마킹하고 제도 개선 동향을 반영해 가며 꾸준히 외국계 금융기관의 규제·애로사항을 발굴·관리할 필요성이 있음

○ 2026 규제개선 종합과제 건의서 검토로 도출한 시사점

- 시장·환경 변화에 따른 디지털금융 규제 개선 수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금융중심지 정책 및 블록체인규제자유특구 실증사업 발굴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 부산·금융중심지에 대한 종합 시사점

○ 금융업권별 규제 개선 과제의 종합적 발굴 및 검토 필요

- 암참 특별보고서는 국내 영업 중인 미국계 은행과 증권사 의견을 토대로 은행 및 증권부문 현안을 도출했고 주한유럽상공회의소 보험위원회가 3가지 안건을 제기하는 등 금융권 내 개별 업권의 규제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됨

- 일부 업권 및 외국계 금융회사의 의견을 넘어 금융권 전 업종에 걸쳐서 업권별 규제 개선 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망라해 종합한 과제 마련이 필요

- 또한 ECCK가 전년도 건의사항의 후속 조치 계획을 제시하고 중소기업중앙회가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추진 경과를 제시하는 것처럼 업권별 규제 개선 사항을 망라한 종합 과제 역시 제안 이후 꾸준한 모니터링이 필요

○ 가업승계 수요에 대응

- 중소기업 정책건의백서에 가업승계제도 관련 업종 변경 제한 요건 폐지, 복수 최대주주의 가업승계 지원세제 활용 허용 등 이슈가 제시되었고 2026 규제개선 종합과제에 가업승계 목적 신탁주식 의결권 제한 개선이 과제로 제기되어 가업승계에 대한 기업계의 관심이 높은 상황임을 알 수 있음

- 가업승계 관련 제도와 금융중심지 정책의 직접적 연관성은 제한적일 수 있으나 기회발전특구 기업 유치를 통한 지역 산업 활성화가 금융중심지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고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가업상속공제 특례가 마련되어 있는 만큼 관련 제도의 개선 방안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 망분리 관련 규제 개선 요청

- 암참 특별보고서가 망분리 의무 적용 완화와 망분리 예외 사유 인정을 건의했고 ECCK 백서에 망분리 환경에서 해외 보안 솔루션 도입 제한 완화가 제시되는 등 외국계 기업들은 망분리 규제 개선 필요성을 체감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글로벌 금융회사 유치를 위해서는 외국계 금융회사의 IT 운영상 제약을 해소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성이 있음

ㅇ 담보 관련 제도·관행 개선 요청

- 중소기업 정책건의백서에 기업가치담보권 제도 도입, 중소기업 자금조달 확대를 위한 동산담보대출 활성화 방안이 제기되었고 생산적금융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과제 중 하나로 신용평가·담보요건 완화가 제시되는 등 부동산을 비롯한 전통적 담보에 의존하는 대출 관행의 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부산은 기술보증기금이 소재하였다는 강점을 활용하여 지식재산권 등 비전통적 담보의 평가 역량을 강화하고 기업금융 제고하는 동시에 담보 제도 개선 방안 관련 연구를 추진하여 향후 담보 제도 개선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

ㅇ 벤처투자 관련 제도 개선 요청

- 생산적금융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과제에서 지주회사 벤처투자 규제 완화와 BDC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등이 과제로 제시되고 중소기업 정책건의백서에 BDC 도입, 일반지주회사 CVC의 외부출자·해외투자 제한 완화, 퇴직연금의 벤처펀드 출자 허용을 비롯한 다수의 벤처투자 관련 정책 과제가 제안되었음

- CVC와 BDC가 공통적으로 현안으로 제기된 점을 감안할 때 금융중심지 육성에 있어서도 CVC와 BDC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지역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 및 모험자본 공급 확대와 연계할 필요가 있음

7 향후 과제

□ 후속 검토가 필요한 사항

ㅇ 반복적으로 다루어진 규제·제도·정책 개선 건의 분야에 대한 심층 검토가 필요

- 앞선 규제·제도·정책 개선 건의 자료들에서 반복적으로 개선 건의가 제기되는 분야(ex. 벤처투자 관련)들은 개선 수요가 높은 것으로 판단되는 바, 추후 심층 검토가 필요

ㅇ 금융 외 분야의 규제 관련 제도 검토

- 금융 분야의 규제 개선 기반 강화를 위해서는 금융 외 분야의 규제 관련 제도들(ex.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규정된 인·허가 등의 신속처리 특례)에 대한 검토도 필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신속처리 특례) ① 제16조제2항에 따라 특화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협의·승인·인가·허가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이 지연되어 특화단지의 조성·운영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해당 인·허가등의 신속한 처리를 신청할 수 있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인·허가등이 의제되는 사항에 관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또는 승인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에 따른 인가·허가 등이 의제되는 사항에 관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3.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8조에 따른 도로 점용 허가
4.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개발사업 협의
5. 그 밖에 특화단지의 조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당 인·허가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의 장(이하 "인·허가권자"라 한다)에게 인·허가등의 신속한 처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인·허가권자의 의견을 들은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해당 인·허가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인·허가등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인·허가권자는 인·허가등의 처리 계획을 15일 이내에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회신하여야 하며, 인·허가권자가 인·허가등의 처리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자료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보완에 걸린 기간은 제3항에 따른 회신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30일 이내에는 처리 계획을 회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처리 계획을 제출한 인·허가권자는 제출일부터 15일 이내에 인·허가등의 처리 결과를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인·허가등의 처리 과정에서 불가피한 연장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 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인·허가권자가 제3항의 처리기간 내에 인·허가등의 처리 계획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회신하지 아니하거나, 제4항의 처리기간 내에 인·허가등의 처리 결과를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요청이 있은 날부터 60일이 지난 날에 인·허가등의 처리가 완료된 것으로 본다.

⑥ 그 밖에 인·허가등의 신속처리의 심의·의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해외의 규제 관련 제도 검토

- 해외의 규제 관련 제도*들을 검토하여 국내 금융 분야 규제에 적용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할 필요성이 있음

* 일본의 No Action Letter(민간기업이 특정 행위가 법령에 저촉되는지 사전에 문의할 수 있는 제도) 및 Financial Market Entry Office(신규 진입 자산운용사가 사전 상담부터 등록과 이후의 감독 등 규제 절차를 단일 창구에서 처리할 수 있게 지원) 등

별첨 암참 특별 보고서 현안 목록(39개)

분야	현안
공통	IT 인프라 – IT 망분리
	IT 인프라 – 클라우드·AI
	실명확인 제도의 개선
	책무구조도
	임직원 보수체계
	금융소비자보호법
	근로제도 – 근로시간 관련
	근로제도 – 과반수 노동조합 근로자대표의 노사협의회 대표성
	외국인 일반투자자에 대한 위험회피 목적 거래 제한 규정 적용 제외
	고객 신용정보 및 개인정보 보호규정 적용
	외국인의 국채/통안채 투자 및 관련 외환거래 제도 개선 협의체 마련
	국채 등에 대한 비과세면제신청서
	장외채권 15분 내 보고 의무 완화
	업무위탁
	교육세
은행업	본점 자본금 인정기준 마련
	외화건전성 부담금
	은행법상 신용공여한도의 범위 – 결제목적의 예치금 제외
	예대율규제
	외은지점에 대한 채권발행 허용
	지점의 자금 조달제약 개선 – 본지점 차입한도 폐지
	지급등 증빙서류의 간소화
	외환포지션 한도 관련 규제 완화
	수취은행의 확인의무 완화
	제3자 외환거래에 있어 투자전용계정 개설은행과 업무용계좌 개설은행 간 역할 분담 명확화
	자금통합관리 한도 상향
	통화안정증권에 대한 투자매매업 인가
	신용보증기금 출연금 및 예금보험료 제외 또는 경감
증권업	적용 요건의 일관성
	대주주 요건 (신규 추가 인가 및 인가 유지 요건)
	전문인력 요건: 리스크 기반 비즈니스 모델 접근방식
	다양하고 전문화된 시장 진입자 육성
	IPO 주관사의 주식 보유 의무
	내부자거래 사전 공시 제도
	DLS 발행인 자격
	상장증권의 장외거래
	공매도 규제 위반 관련 조사 및 제재
	공매도 중앙점검 시스템
	규제 투명성 및 제재 절차

자료 : 암참 특별보고서 한국 금융허브 추진전략 은행 및 증권부문 편(주한미국상공회의소)